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BNK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11월 0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1-6910-1100 / 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년 11월 03일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 AD051]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BNK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주식의 가치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1]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 전략 : 전통적 고배당주 기반에 향후 배당 확대 가능성에 기반한 배당성장주 투자전략을 가미하여, 시장 트랜드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1] : KOSPI*90% + Call*10%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1.250	0.700	1.320	1.2533	227	358	494	781	1,5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2.050	1.500	1.590	2.0507	210	427	649	1,114	2,399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4% 이내	0.850	0.300	0.980	0.8532	127	218	312	513	1,0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950	0.400	1.030	0.9532	98	200	306	531	1,177

(주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총보수·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 8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5.11.04 ~ 26.11.03)	최근 2년 (24.11.04 ~ 26.11.03)	최근 3년 (23.11.04 ~ 26.11.03)	최근 5년 (21.11.04 ~ 26.11.03)	설정일 이후
판매수수료	2013-03-26	33.68	51.16	36.06	17.51	11.08

미징구형(C1)(%)						
비교지수(%)	2013-03-26	32.12	44.74	30.90	12.98	7.94
수익률 변동성(%)	2013-03-26	41.25	31.79	27.22	22.82	17.98

(주1) 비교지수 : KOSPI*90% + Call*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조동훈	1989	책임 (매니저)	20 개	3,794억	37.18	46.67	30.22	49.46	6년 5개월
이건민	1979	부책임 (상무)	17 개	3,971억	37.19	56.76	30.22	49.46	17년 10개월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조동훈-2개, 402억 / 이건민-0개, 0억]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서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운용전략으로 인한 위험	주식 투자 시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주당 배당 금액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 높은 종목과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투자하므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table>
<tr><td></td><td>해지위험</td><td colspan="3">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td></tr>
<tr><td>매입방법</td><td colspan="4">·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r>
<tr><td>환매방법</td><td colspan="4">·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4">없음</td></tr>
<tr><td rowspan="2">기준가격</td><td>산정방법</td><td colspan="3">·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 colspan="3">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r><td rowspan="5">과세</td><td>구분</td><td colspan="3">과세의 주요내용</td></tr>
<tr><td>집합투자기구</td><td colspan="3">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 colspan="3">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td>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 colspan="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퇴직연금제도의 세제</td><td colspan="3">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BNK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td></tr>
<tr><td>모집기간</td><td colspan="2">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 colspan="2">2026년 11월 18일</td><td>존속기간</td><td>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4">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판매 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td></tr>
</table></td></tr>
</table>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펀드(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문투자자 및 기관(I)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Wrap전용(W)	Wrap Account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D051)					
(클래스) 종류	Class A1	Class A-e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D057	AD058	AD059	AD060	AD061	AD062
(클래스) 종류	Class C-e	Class C-i	Class C-f	Class C-w	Class C-P	Class C-P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D063	AD064	AD065	AD066	AL662	AM970
(클래스) 종류	Class S	Class S-P	Class A-G	Class C-G	Class C-Pe	Class C-P2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P599	AP600	BP558	BP559	BY831	BY83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1좌 단위로 모집),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및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D051)					
(클래스) 종류	Class A1	Class A-e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D057	AD058	AD059	AD060	AD061	AD062
(클래스) 종류	Class C-e	Class C-i	Class C-f	Class C-w	Class C-P	Class C-P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D063	AD064	AD065	AD066	AL662	AM970
(클래스) 종류	Class S	Class S-P	Class A-G	Class C-G	Class C-Pe	Class C-P2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P599	AP600	BP558	BP559	BY831	BY83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2.10.02	최초설정
2013.01.07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06.25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10.01	적용 법 개정 및 연금저축계좌 가입 Class C-P 신설
2013.11.22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퇴직연금 Class C-P2 신설
2014.01.20	연금저축 관련 소득세법 및 적용 법 개정사항 반영
2014.02.28	Class S 및 Class S-P 신설
2014.03.20	Class S-P 판매보수 인하 및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추가
2014.06.02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5.01.09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추가 및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2015.07.10	퇴직연금전용 Class C-P2 환매수수료 삭제 및 법 · 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5.08.05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GS자산운용 주식회사=>BNK자산운용 주식회사] 홈페이지 주소 변경[www.gsasset.co.kr => www.bnkasset.co.kr] 펀드명 변경[GS튼튼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외 주요 주주현황 등 변경
2015.10.0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5.12.23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변경, 환매수수료 삭제 및 법 개정사항 반영
2016.06.1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개정 기업공시서식 반영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투자위험 등급 6단계 체계로 변경)
2016.07.30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매매 기준시간 변경(15시=>15시 30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유보가능이익 조항 변경)
2016.12.15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변경 및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추가
2017.04.29	클린클래스 Class A-G 및 C-G 신설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17.09.1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7.10.25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4등급) / Class C-Pe 및 C-P2e 신설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01.30	운용전문인력 변경 /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변경(자본금 및 주요 주주 현황 변경 등)
2018.03.14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2018.10.18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2019.09.16	기업공시서식 변경
2019.11.08	정기갱신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투자위험등급(4등급->3등급)
2020.06.05	주식 부문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
2020.10.30	등급 변경(3등급→2등급),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
2021.12.24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

2022.03.18	직판 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2.11.23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08.14	채권평가회사 추가
2023.11.24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2024.04.26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4.10.29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직판 클래스 삭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2025.11.25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6.11.18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1등급), 모자형 구조 관련 기재내용 간소화(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BNK 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1층 (대표전화 : 02-6910-11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11.03 기준)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조동훈	1989	책임 (매니저)	20개	3,794억	37.18	46.67	30.22	49.46	6년 5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브레인자산운용 에쿼티운용본부(3년) -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2019.03~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2개, 402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기간
차소윤(수석매니저)	2020.06.05 ~ 2024.04.25
조동훈(매니저)	2024.04.26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③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건민	1979	부책임 (상무)	17 개	3,971억	37.19	56.76	30.22	49.46	17년 10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동부증권 주식운용(4년 8개월) - AK투자자문 주식운용(3년) - HDC자산운용 주식운용(4년 6개월) -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2018.03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0개, 0억]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④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역	운용기간
조동훈(매니저)	2020.06.05 ~ 2024.04.25
이건민(상무대우)	2024.04.26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Class)	한글 표기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보수(연간, 순자산총액의 %)			
				판매	운용	신탁	사무관리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선취수수료 : 납입금액의 1.0% 이내	0.70%	0.50%	0.03%	0.02%
A-e	수수료선취-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선취수수료 :	0.30%	0.50%	0.03%	0.02%

	온라인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4% 이내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가입제한 없음	-	1.50%	0.50%	0.03%	0.02%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lass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1.00%	0.50%	0.03%	0.02%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lass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0.80%	0.50%	0.03%	0.02%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lass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0.70%	0.50%	0.03%	0.02%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0.40%	0.50%	0.03%	0.02%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 및 기관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0.05%	0.50%	0.03%	0.02%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	0.03%	0.50%	0.03%	0.02%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일임형 Wrap전용	-	0.00%	0.50%	0.03%	0.02%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0.90%	0.50%	0.03%	0.02%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자	-	0.65%	0.50%	0.03%	0.02%
S	수수료후취-온라인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종류 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후취수수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0.25%	0.50%	0.03%	0.02%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	-	0.20%	0.50%	0.03%	0.02%

	연금	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선취수수료 : 납입금액의 0.4% 이내	0.35%	0.50%	0.03%	0.02%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	0.45%	0.50%	0.03%	0.02%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	0.42%	0.50%	0.03%	0.02%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	0.32%	0.50%	0.03%	0.02%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8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NK배당증권 모투자신탁1호(주식)	주요 투자대상	- 주식 80% 이상 (다만, 국내에서 발생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 채권 20% 이하 등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주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90%+Call금리*10%
	주요 투자전략	-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주식에의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은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 추구 - 배당주 전략, 가치주 전략, +α 전략

※ 그러나 위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90%+Call금리*1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90%+Call금리*1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BNK배당증권 모투자신탁1호 (주식)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80% 이상을 투자합니다.
②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및 ③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및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1)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1)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8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
②	채권	2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2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2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⑥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ETF는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⑦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10% 이하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 채권이나 주식 ·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등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총자산의 10% 이하로 합니다.
⑧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⑨	증권의 대여 주2)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⑩	증권의 차입 주3)	2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⑫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 위의 ①~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내용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

	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1)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내용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

	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⑧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 투자대상 ⑥~⑩, 나. 투자제한②~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가. 투자대상⑦, 나. 투자제한②의 본문, ④ 내지 ⑥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의 "가.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1) 모자형 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장기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 KOSPI*90%+Call금리*10%

주1) 비교지수 선정사유 : KOSPI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가격에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시가총액지수로서 국내 주식시장의 종합시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지수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 및 유동자금비율 등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주2)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국내 주식에는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지분증권관련 증권예탁증권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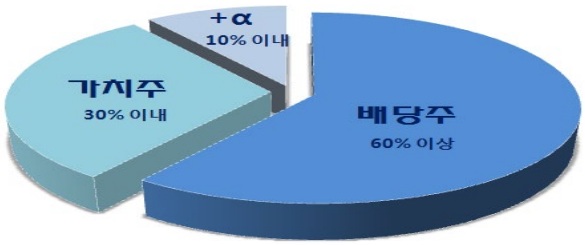
-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는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에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실질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주 등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주로 주식매매차익과 배당수익에 의하여 펀드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1. 상품의 주요구성



2. 투자 프로세스

① 1단계 : Investment Universe(투자 후보군) 구성

-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배당금의 지속·증가 추이/ 향후 높은 배당기대)
- 계량모델(Quant Model)을 통한 필터링으로 "BNK배당 투자후보군" 구성

② 2단계 : BUY LIST(투자 가능 종목군) 구성

- 투자 후보군 내에서 배당수익률과 안정적 장기성장성 분석을 토대로 BUY LIST 구성

③ 3단계 : Actual Portfolio(실제 포트폴리오) 구축

- 이익 · 배당의 안정성, 기업가치/환경분석, 주식의 유동성 등을 감안한 투자 종목 및 비중 확정

④ 4단계 : Rebalancing(포트폴리오 재조정)

- 적정 가치에 도달한 종목, 예상 배당수익률이 감소한 종목, 경영환경이 약화된 종목 등의 경우 보다 유망한 종목으로 교체를 통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3. 주요 운용전략

◎ 배당주 전략

- 안정적인 배당 가능 기업, 현금사정이 여유롭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을 선정
- 지속적인 배당지급 가능여부와 향후 배당 확대 가능성에 초점
- 안정적인 수익창출 능력(ROE:자기자본이익률)과 기업의 안정성(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을 감안

◎ 가치주 전략

-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해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 발굴
- 과도한 시장 반응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본질가치대비 저평가 상황에 초점
- PBR(주가순자산비율)로 단순히 평가하기 보다 ROE(자기자본이익률)를 감안한 PBR을 고려

◎ +α 전략 (초과수익전략)

- cycle(주기)를 가지고 있는 산업 중 turnaround(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산업과 종목 선정
- 특정시점의 변곡점 분석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응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험관리방안

① 시장위험

- 빈번한 자산 배분 지양 및 파생상품 활용으로 불필요한 거래 비용 축소

② 변동성위험
-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성에 노출될 경우 포트폴리오 집중 점검
- 변동성 원인 분석 후 대응 방안 실행

③ 개별기업위험
- 철저한 기업분석과 투자종목의 주기적 기업 탐방

④ 유동성 위험
- 투자종목 선정시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고려

⑤ 신용위험
- 투자종목 선정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낮은 종목 투자 배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모투자신탁에 관한 위험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서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운용전략으로 인한 위험	주식 투자시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주당 배당 금액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 높은 종목과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투자하므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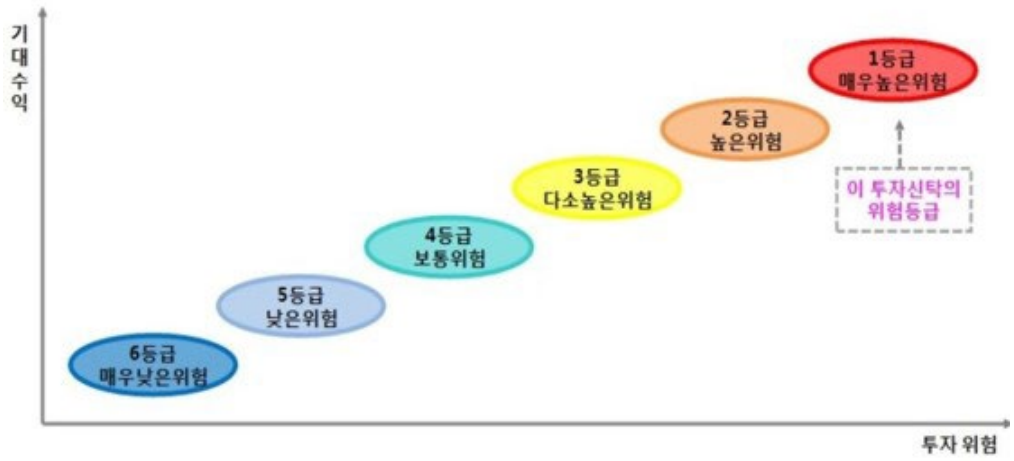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의 '나. 환매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 중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8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80.2459%**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결산일 : 2026.10.01)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국내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여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 기준(97.5% Var 모형 사용)]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 수익률 변동성 기준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3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2017.10.25	3등급	4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 9.86%
2019.11.08	4등급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 10.08%
2020.10.30	3등급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 18.0765%
2026.11.18	2등급	1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80.2459%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클래스)	한글 표기	가입자격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익자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수익자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가입제한 없음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lass C1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lass C2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lass C3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On-line)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수익자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 및 기관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일임형 Wrap 전용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자
S	수수료후취-온라인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도록 신탁업자에게 지시하여야 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 시행령 제 256 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0)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다. 전환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2) (1)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3) (1)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1)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Class C1>

보수	
판매	1.50%
운용	0.50%
수탁	0.03%
사무	0.02%
총 보수	2.05%

판매보수 차감 → Class C1 보유 1년 이상 시 자동전환

<Class C2>

보수	
판매	1.00%
운용	0.50%
수탁	0.03%
사무	0.02%
총 보수	1.55%

판매보수 차감 → Class C2 보유 1년 이상 시 자동전환

<Class C3>

보수	
판매	0.80%
운용	0.50%
수탁	0.03%
사무	0.02%
총 보수	1.35%

판매보수 차감 → Class C3 보유 1년 이상 시 자동전환

<Class C4>

보수	
판매	0.70%
운용	0.50%
수탁	0.03%
사무	0.02%
총 보수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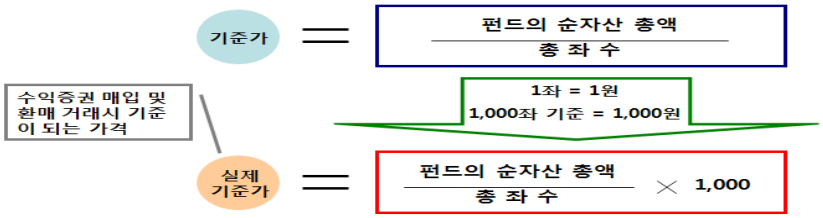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 · 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포함한다)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bnkasset.co.kr)·판매회사·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발행/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평가
⑤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비상장채권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⑦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 위원 -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팀장, 운용담당팀장, 리스크관리담당팀장, 컴플라이언스담당팀장
- 위원회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설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한글 표기	가입자격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		-	납입시	환매시	환매시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	**없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4% 이내	-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가입제한 없음	-	-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lass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lass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lass C3 수익증권을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	
C-e	수수료미징구-온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	

	라인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 및 기관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일임형 Wrap전용	-	-	
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C-P2	수수료후취-온라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자	-	-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납입금액의 0.4% 이내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	-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	-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한글 표기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및비용	합성총보수및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증권거래비용
지급시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50	0.70	0.03	0.02	**1.2500**	0.0033	**1.2533**	**1.2557**	1.320	0.3327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30			**0.8500**	0.0032	**0.8532**	**0.8557**	0.980	0.3333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0			**2.0500**	0.0007	**2.0507**	**2.0510**	1.590	0.2476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00			**1.5500**	0.0018	**1.5518**	**1.5518**		0.3315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80			**1.3500**	0.0000	**1.3500**	**1.3500**		0.3064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			**1.2500**	0.0024	**1.2524**	**1.2547**		0.3342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40			**0.9500**	0.0032	**0.9532**	**0.9556**	1.030	0.3318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 및 기관		0.05			**0.6000**	0.0025	**0.6025**	**0.6044**		0.3239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0.03			**0.5800**	0.0025	**0.5825**	**0.5844**		0.3239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00			**0.5500**	0.0025	**0.5525**	**0.5548**		0.3281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90			**1.4500**	0.0027	**1.4527**	**1.4552**		0.3315

	-개인연금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0.65			**1.2000**	0.0032	**1.2032**	**1.2055**		0.3334
S	수수료후취 -온라인		0.25			**0.8000**	0.0024	**0.8024**	**0.8046**		0.3305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0.20			**0.7500**	0.0028	**0.7528**	**0.7550**		0.3308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35			**0.9000**	0.0025	**0.9025**	**0.9044**		0.3239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45			**1.0000**	0.0025	**1.0025**	**1.0044**		0.3239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0.42			**0.9700**	0.0033	**0.9733**	**0.9757**		0.3312
C-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0.32			**0.8700**	0.0035	**0.8735**	**0.8761**		0.3319

* 직전 회계연도 : 2025.10.02 ~ 2026.10.01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한 총 보수 · 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Class C-i, C-f, A-G, C-G의 경우 미설정된 펀드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은 운용중인 타 클래스의 평균값을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시 실제 발생하는 기타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8)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파생상품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1,034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105,187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종류(클래스)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Class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27	358	493	780	1,59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7	358	494	781	1,596
Class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7	217	312	511	1,08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7	218	312	513	1,091
Class C1 (CDSC Clas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10	426	649	1,114	2,3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0	427	649	1,114	2,399
Class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8	199	305	529	1,17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8	200	306	531	1,177
Class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 및 기관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2	126	194	337	7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2	127	194	338	757
Class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0	122	187	326	7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0	122	188	327	733
Class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7	116	178	309	6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7	116	178	311	697
Class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49	303	463	799	1,74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9	304	463	800	1,750
Class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3	251	384	665	1,46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4	252	385	666	1,467
Class S	수수료후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8	184	257	447	9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8	185	258	448	998
Class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7	156	241	420	93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7	158	242	421	939
Class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2	268	407	696	1,4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2	268	407	697	1,494

Class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3	210	321	556	1,2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3	210	321	557	1,234
Class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0	204	311	540	1,1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0	204	312	542	1,201
Class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9	183	280	486	1,08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0	183	281	487	1,08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합성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1 :1.0%, Class A-e 및 A-G : 0.4% 가정)

주2) Class A1(선취판매수수료를 1%로 가정)과 Class C1의 종류별로 합성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Class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Class S의 경우 1년 후는 그 시점에 환매청구한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 0.15%를 반영하였고, 3년후부터는 3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7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

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S-P, C-Pe 가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소득이 1,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C-P2e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4기(2025.10.02 - 2026.10.01)	신한회계법인	적정
제13기(2024.10.02 - 2025.10.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2기(2023.10.02 - 2024.10.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운용펀드 기준

재무상태표			
항 목	제14기	제13기	제12기
	(2026.10.01)	(2025.10.01)	(2024.10.01)
운용자산	34,672,202,722	18,329,087,367	15,699,304,675
증권	33,815,819,007	17,820,831,433	14,492,586,31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856,383,715	508,255,934	1,206,718,358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06,854,699	431,822,776	381,332,557
자산총계	35,179,057,421	18,760,910,143	16,080,637,23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274,127	53,759,980	25,125,650
부채총계	9,274,127	53,759,980	25,125,650
원본	8,087,962,744	8,697,021,978	10,193,818,854
수익조정금	-2,655,379,300	-451,707,651	-483,712,026
이익잉여금	29,737,199,850	10,461,835,836	6,345,404,754
자본총계	35,169,783,294	18,707,150,163	16,055,511,582

손익계산서			
항 목	제14기	제13기	제12기
	(2025.10.02 - 2026.10.01)	(2024.10.02 - 2025.10.01)	(2023.10.02 - 2024.10.01)
운용수익	20,357,276,139	5,610,200,333	2,109,637,751
이자수익	14,835,010	20,995,412	33,737,71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0,342,441,129	5,589,204,921	2,075,900,041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825,00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825,000	0	0
당기순이익	20,356,451,139	5,610,200,333	2,109,637,75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BNK 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10.02 - 2026.10.01)			전기(2024.10.02 - 2025.10.01)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합계	0	0	0	0	0	0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BNK 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단위: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32.65

주1) 동종유형이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해당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거래비용 및 매매회전율]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BNK 배당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10.02 - 2026.10.01)			전기(2024.10.02 - 2025.10.01)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22,965	116	0.0941	72,859	75	0.1025
합계	122,965	116	0.0941	72,859	75	0.1025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BNK 배당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701,677	57,949	723,892	65,148	33,391	195.11	32.65

주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동종유형이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해당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 운용펀드 기준

과 목	제14기(2026.10.01)		제13기(2025.10.01)		제12기(2024.10.0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856,383,715		508,255,934		1,206,718,358
1. 현금및현금성자산	856,383,715		508,255,934		1,206,718,358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33,815,819,007		17,820,831,433		14,492,586,317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33,815,819,007		17,820,831,433		14,492,586,317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506,854,699		431,822,776		381,332,55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59,360		28,824		3,060,085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506,795,339		431,793,952		378,272,472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35,179,057,421		18,760,910,143		16,080,637,232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9,274,127		53,759,980		25,125,65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8,449,127		53,759,980		25,125,650	
4. 수수료미지급금	825,00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9,274,127		53,759,980		25,125,650
자 본						
1. 원 본	8,087,962,744		8,697,021,978		10,193,818,85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7,081,820,550		10,010,128,185		5,861,692,728	
(발행좌수 당기: 8,087,962,744 좌	이익잉여금	29,737,199,850		10,461,835,836		6,345,404,754
전기: 8,697,021,978 좌	수익조정금	-2,655,379,300		-451,707,651		-483,712,026
전전기: 10,193,818,854 좌)						
(기준가격 당기: 4,297.18 원						
전기: 2,115.31 원						
전전기: 1,540.08 원)						
자 본 총 계		35,169,783,294		18,707,150,163		16,055,511,58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5,179,057,421		18,760,910,143		16,080,637,232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운용펀드 기준

과 목	제14기(2025.10.02-2026.10.01)		제13기(2024.10.02-2025.10.01)		제12기(2023.10.02-2024.10.01)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4,835,010		20,995,412		33,737,710
1. 이 자 수 익	14,835,010		20,995,412		33,737,710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0,361,047,839		5,601,716,162		2,099,293,258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0,370,129,220		4,090,388,330		804,996,254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9,990,918,619		1,511,327,832		1,294,297,004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8,606,710		12,511,241		23,393,217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8,606,710		12,511,241		23,393,217	
운 용 비 용		825,00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825,00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0,356,451,139		5,610,200,333		2,109,637,751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2.516882407		0.645071422		0.20695264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운용펀드 기준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0.02 - 2026.10.01	87	184	49	164	55	200	81	352
2024.10.02 - 2025.10.01	102	157	28	48	43	74	87	187
2023.10.02 - 2024.10.01	124	175	36	55	58	91	102	161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625,003좌/67,143,375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0,128,580좌/127,190,710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2,040,837좌/157,151,462원

► Class별 기준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A1	2025.10.02 - 2026.10.01	22	47	19	64	20	74	21	91
	2024.10.02 - 2025.10.01	29	45	5	9	12	22	22	47
	2023.10.02 - 2024.10.01	45	64	8	13	25	39	29	45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64,927좌/1,152,988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764,068좌/18,777,099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590,058좌/25,872,523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A-e	2025.10.02 - 2026.10.01	4	8	6	22	6	21	4	18
	2024.10.02 - 2025.10.01	4	6	4	7	4	7	4	8
	2023.10.02 - 2024.10.01	3	4	4	5	3	4	4	6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24,554좌/6,106,773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661,092좌/5,615,432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981,139좌/7,649,880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1	2025.10.02 - 2026.10.01	0	0	2	7	2	8	0	0
	2024.10.02 - 2025.10.01	0	0	0	0	0	0	0	0
	2023.10.02 - 2024.10.01	0	0	0	0	0	1	0	0

(주1)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088좌/38,376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2	2025.10.02 - 2026.10.01	0	0	0	0	0	0	0	0

	2024.10.02 - 2025.10.01	0	0	0	0	0	1	0	0
	2023.10.02 - 2024.10.01	0	0	0	0	0	1	0	0

(주1)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25좌/3,230원

(주2)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4,147좌/207,194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3	2025.10.02 - 2026.10.01	0	0	0	0	0	0	0	0
	2024.10.02 - 2025.10.01	0	1	0	1	1	1	0	0
	2023.10.02 - 2024.10.01	1	1	0	1	1	1	0	1

(주1)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6,714좌/148,327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4	2025.10.02 - 2026.10.01	1	2	0	1	1	2	1	4
	2024.10.02 - 2025.10.01	2	3	1	1	1	2	1	2
	2023.10.02 - 2024.10.01	2	3	1	1	1	2	2	3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1,200좌/134,067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84,146좌/601,220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60,093좌/2,244,980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e	2025.10.02 - 2026.10.01	7	15	4	14	5	18	6	27
	2024.10.02 - 2025.10.01	9	14	4	7	6	11	7	15
	2023.10.02 - 2024.10.01	13	19	10	15	14	23	9	14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04,156좌/6,611,650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399,615좌/9,518,696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816,717좌/13,882,622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w	2025.10.02 - 2026.10.01	1	2	0	1	1	2	1	2
	2024.10.02 - 2025.10.01	1	1	0	1	1	1	1	2
	2023.10.02 - 2024.10.01	1	2	1	1	1	1	1	1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11,894좌/1,194,216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65,979좌/2,005,948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57,309좌/2,135,413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P	2025.10.02 - 2026.10.01	1	2	0	0	0	1	1	4
	2024.10.02 - 2025.10.01	1	1	0	0	0	0	1	2
	2023.10.02 - 2024.10.01	1	2	0	0	0	1	1	1

(주1)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73,350좌/999,520원

(주2)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36,435좌/672,594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P2	2025.10.02 - 2026.10.01	30	62	2	5	7	27	24	102
	2024.10.02 - 2025.10.01	31	48	3	6	5	8	30	63
	2023.10.02 - 2024.10.01	32	44	3	5	4	5	31	48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41,298좌/9,105,417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386,470좌/44,782,196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3,075,752좌/50,522,216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S	2025.10.02 - 2026.10.01	1	1	0	1	0	1	0	2
	2024.10.02 - 2025.10.01	0	1	0	0	0	0	1	1
	2023.10.02 - 2024.10.01	1	1	0	0	0	1	0	1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9,768좌/431,740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58,632좌/975,900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01,977좌/779,088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S-P	2025.10.02 - 2026.10.01	2	4	0	1	1	4	1	5
	2024.10.02 - 2025.10.01	2	3	1	1	0	1	2	4
	2023.10.02 - 2024.10.01	2	2	0	0	0	0	2	3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76,997좌/2,477,452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01,712좌/4,441,274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711,614좌/4,176,373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Pe	2025.10.02 - 2026.10.01	2	3	1	2	1	3	2	6
	2024.10.02 - 2025.10.01	3	4	0	0	2	2	2	3
	2023.10.02 - 2024.10.01	3	4	0	1	0	0	3	4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80,994좌/1,762,280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81,502좌/2,492,698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090,598좌/5,372,550원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C-P2e	2025.10.02 - 2026.10.01	22	39	14	42	11	35	25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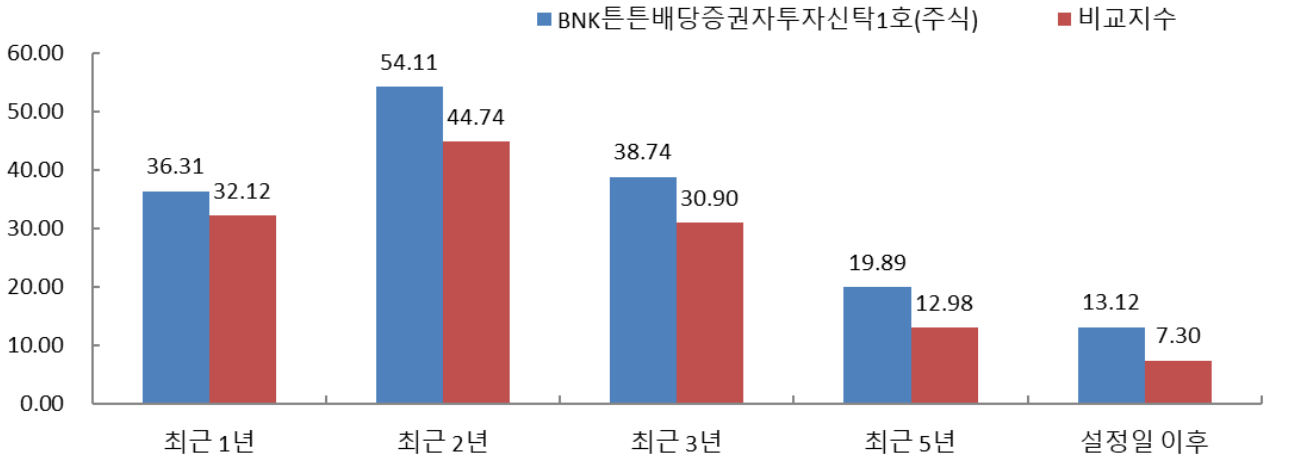
	2024.10.02 - 2025.10.01	24	31	8	12	11	15	22	39
	2023.10.02 - 2024.10.01	25	30	6	8	7	9	24	32

(주1) 2025.10.02 - 2026.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500,442좌/38,166,792원
(주2) 2024.10.02 - 2025.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0,654,129좌/36,977,497원
(주3) 2023.10.02 - 2024.10.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3,294,250좌/43,449,326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다를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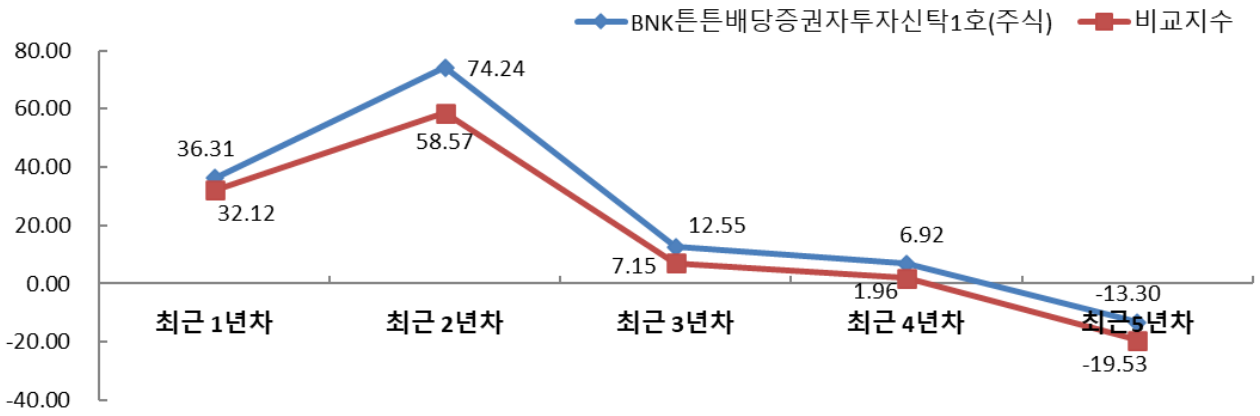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1.04 ~ 26.11.03	24.11.04 ~ 26.11.03	23.11.04 ~ 26.11.03	21.11.04 ~ 26.11.03	12.10.02 ~ 26.11.03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6.31	54.11	38.74	19.89	13.12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7.30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7.75
A1	34.68	52.28	37.09	18.42	12.14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8.07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8.06
A-e	35.20	52.86	37.61	18.89	12.58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8.36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8.44

C1	33.68	51.16	36.06	17.51	11.08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7.94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7.98
C2	34.36	51.91	36.74	18.10	11.10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8.17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8.67
C3	-45.74	-3.38	1.22	-1.33	3.40
비교지수	-29.45	5.77	6.22	-0.33	3.14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9.20
C4	34.68	52.29	37.09	18.42	14.34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9.87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9.88
C-e	35.07	52.72	37.48	18.77	12.06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7.30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7.75
C-w	35.59	53.30	38.01	19.24	15.15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9.49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20.80
C-P	34.43	52.00	36.83	18.19	11.55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7.80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8.16
C-P2	34.75	52.36	37.16	18.48	11.94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7.99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8.22
S	35.27	52.94	37.68	18.95	12.60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8.19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8.40
S-P	35.33	53.01	37.75	19.01	12.64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8.19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18.40
C-Pe	35.04	52.69	37.46	18.75	14.87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9.75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21.24
C-P2e	35.17	52.84	37.59	18.86	14.54

비교지수	32.12	44.74	30.90	12.98	9.28
수익률변동성(%)	41.25	31.79	27.22	22.82	21.02

주1) 비교지수 : KOSPI*90 + Call금리*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6) 수익률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5.11.04 ~ 26.11.03	24.11.04 ~ 25.11.03	23.11.04 ~ 24.11.03	22.11.04 ~ 23.11.03	21.11.04 ~ 22.11.03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6.31	74.24	12.55	6.92	-13.30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A1	34.68	72.19	11.19	5.58	-14.42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A-e	35.20	72.84	11.62	6.01	-14.06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C1	33.68	70.92	10.32	4.76	-15.12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C2	34.36	71.76	10.88	5.27	-14.68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C3	-45.74	72.03	11.09	5.48	-14.51
비교지수	-29.45	58.57	7.15	1.96	-19.53

C4	34.68	72.19	11.20	5.59	-14.42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C-e	35.07	72.68	11.52	5.90	-14.15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C-w	35.59	73.34	11.95	6.33	-13.79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C-P	34.43	71.87	10.98	5.37	-14.60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C-P2	34.75	72.27	11.25	5.64	-14.37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S	35.27	72.93	11.68	6.07	-14.02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S-P	35.33	73.01	11.74	6.12	-13.97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C-Pe	35.04	72.65	11.50	5.88	-14.17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C-P2e	35.17	72.81	11.60	5.99	-14.08
비교지수	32.12	58.57	7.15	1.96	-19.53

주1) 비교지수 : KOSPI*90 + Call금리*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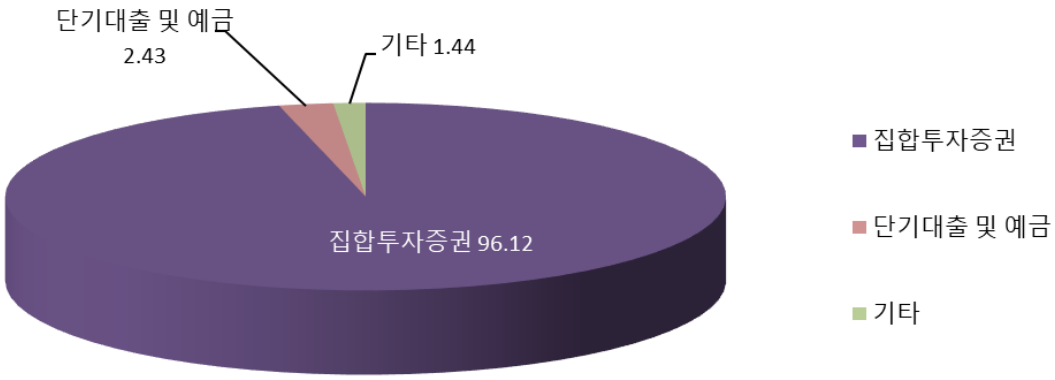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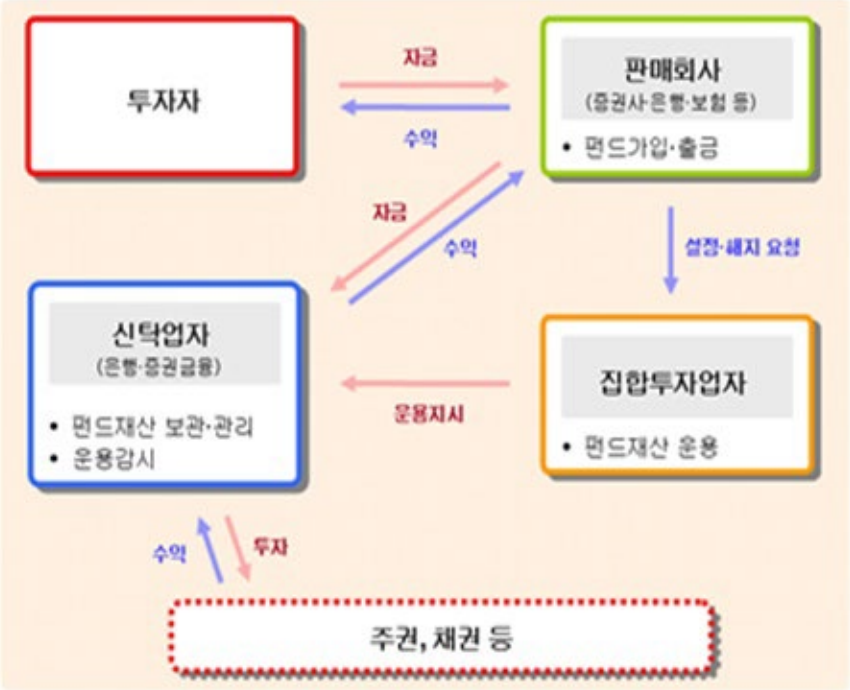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10.01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338	0	0	0	0	0	9	5	352
	(0.00)	(0.00)	(0.00)	(96.12)	(0.00)	(0.00)	(0.00)	(0.00)	(0.00)	(2.43)	(1.44)	(100.00)
합계	0	0	0	338	0	0	0	0	0	9	5	352
	(0.00)	(0.00)	(0.00)	(96.12)	(0.00)	(0.00)	(0.00)	(0.00)	(0.00)	(2.43)	(1.44)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2026.11.03 기준)

회사명	BNK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21층 (연락처 : 02-6910-1100, www.bnkasset.co.kr)
회사 연혁	2008.07 GS 자산운용(주) 설립 2015.07 자본금 증자(+40.5 억) 및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사명 변경 2017.12 BNK 금융지주 100% 자회사 편입 및 자본금 증자(+30 억) 2018.11 자본금 증자(+30 억) 2020.08 자본금 증자(+30 억) 2021.05 자본금 증자(+156.25 억)
자본금	416.75 억
주요 주주현황	BNK 금융지주(100%)
이해관계인	한국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

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4.12.31	'25.12.31	항 목	'24.01.01~ '24.12.31	'25.01.01~ '25.12.31
현금및예치금	4,046	5,398	영업수익	26,589	33,313
유가증권	169,120	187,543			
대출채권	25	31			
유형자산	1,527	4,858	영업비용	17,348	19,862
기타자산	4,968	6,078			
자산총계	**179,686**	**203,908**	영업이익	9,241	13,451
예수부채	220	192			
기타부채	5,905	14,172	영업외수익	2,303	7,675
부채총계	**6,125**	**14,364**			
자본금	41,675	41,675	영업외비용	196	54
자본잉여금	109,079	109,079			
이익잉여금	22,807	38,790			
자본조정	0	0	경상이익	11,348	21,072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0	0	법인세 등	2,738	5,089
			당기순이익	8,610	15,983
자본총계	**173,561**	**189,544**			

라. 운용자산 규모(2026.11.03 기준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6,227	21,460	1,599	0	709	1,044	4,107	0	2,010	68,167	105,32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1가) ☏ 02-1588-1111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kebhana.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회사연혁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www.egap.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단, 집합투자규약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

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125조 각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

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예비투자설명서
5. 간이투자설명서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